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 2. 23 (금) 14:00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2월 15 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0 일

3. 제안 이유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 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위탁 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으로 개정(안 제5조 4항)
- 기금의 사용 등 - 기금중 일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추가(안 제9조)
-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융자심의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심의 추가(안 제13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6년 3월22일 전문개정된 후 일곱차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 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8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590호(2001.12.31)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
2.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노동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노동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①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노동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노동자수 등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①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